

소통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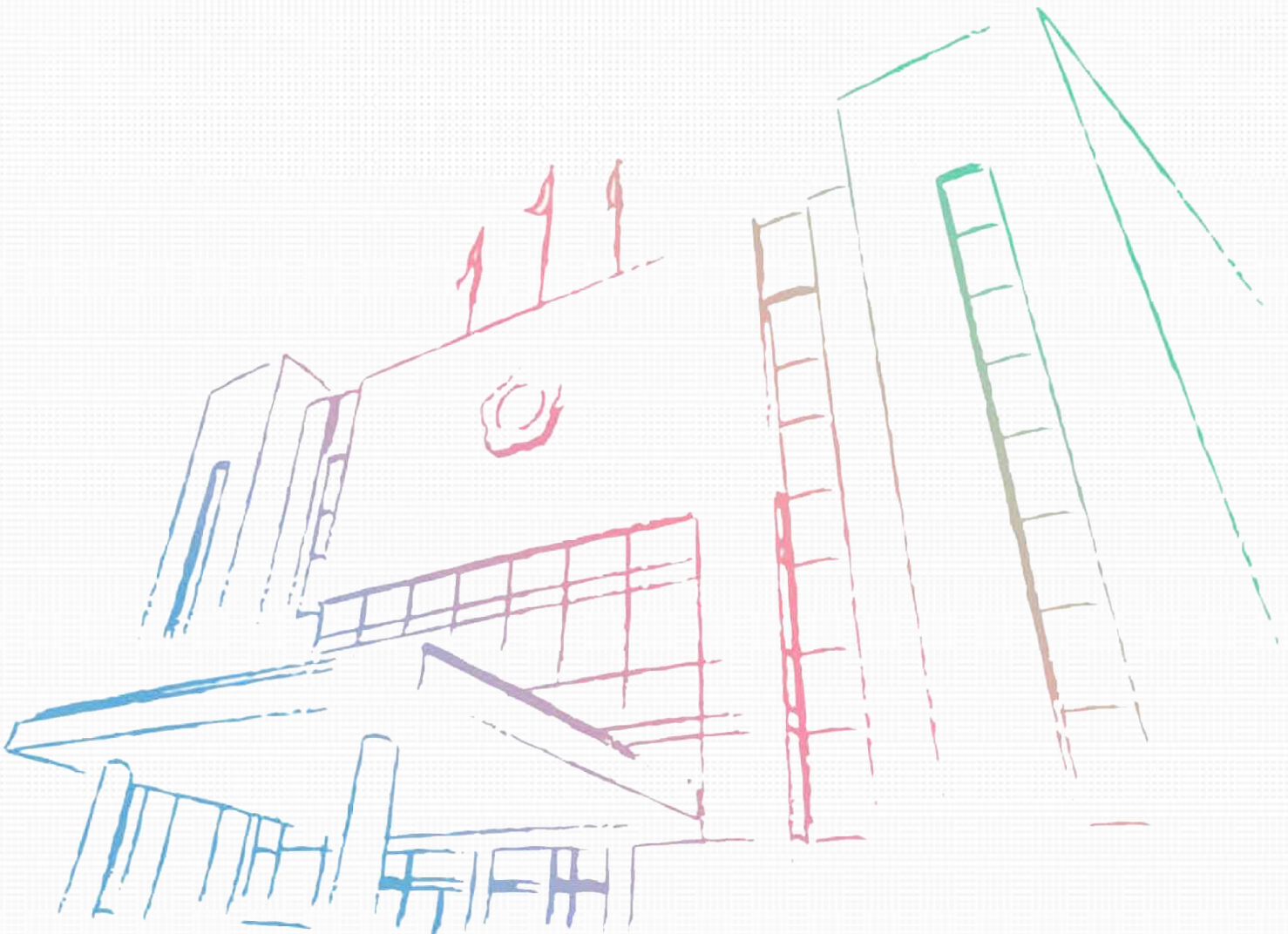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보

2025년 10월





목차

I 법령 제정·개정 동향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2
2. 지방공기업법(개정)	4
3. 지방자치법(개정)	11
4.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13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개정)	15

II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1. 김해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18
2. 제주특별자치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	19
3. 연천군 폭염 대비 근로자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
4. 경상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	21
5. 인천광역시 서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22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3

III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1.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제4호의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 소유의 차량이나 장비 등 재산에 피해를 입은 경우 시장이 그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조례 규정 가능 여부(충청남도 당진시)	25
2.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지방양성평등기금의 용도를 같은 법 제43조 각 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 가능 여부(경상남도)	28
3.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그 추진 상황을 지방의회에 중간보고하도록 조례 규정 가능 여부(전라남도 고흥군)	30
4.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38조의 위임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에 같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의 범위를 벗어난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규정 가능 여부(대전광역시 서구)	32

IV 국외 입법례

1. 오스트리아의 공공정보 접근권 관련 헌법 개정 및 정보자유법	36
---	----

1. 법령 제정·개정 동향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75호, 2025. 4. 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우선지정일자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를 고시하도록 하며, 시·도지사는 우선지정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는 등 노인일자리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875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우선지정일자리의 선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이하 이 조에서 "우선지정일자리"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우선지정일 자리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우선지정일 자리 관련 사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68호, 2025. 4. 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발전·이용·보급에 필요한 사업과 「해운법」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지방공사는 해당 지방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합의를 거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출자 등은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경영상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공사의 사장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등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868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발전·이용·보급에 필요한 사업

12. 「해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제29조 중 "세출예산의 각 세항(細項) 및 목(目) 경비률"을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공인회계사"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회계감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및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인"으로, "회사"는 "지방직영기업"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

제40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설립)"을 "(설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사는 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합의를 거쳐 다른 지방자치단체(시·도와 시·군·자치구 모두 합의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의 관할 구역에서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한 출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심사를 거쳤거나 제외된 사업

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나.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투자심사에 한정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2.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거쳤거나 같은 조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⑤ 제1항에 따라 출자한 법인에 최대주주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의 사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하는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회계감사 보고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회계감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회계감사인의 권한 및 회계감사인, 이사 또는 감사 등의 공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제21조제1항,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인"으로, "회사"는 "공사"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제10조"는 "제66조제2항"으로 본다.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를 각각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로 하고, 제6장에 제81조 및 제8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벌칙) ①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공사·공단의 임원 및 그 밖에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64조의2제1항·제6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공사·공단의 임원 및 그 밖에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66조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회계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 보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공사·공단의 임원 및 그 밖에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회계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감사인의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가.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

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다.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3. 회계감사인에게 제66조제2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82조(벌칙) ① 회계감사인, 회계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감사(제78조의4에 따른 평가원의 감사는 제외한다) 또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서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또는 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83조(종전의 제81조) 중 "제65조 또는 제66조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을 "제65조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

· 제12호, 제29조, 제40조제2항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 제35조의2 및 제66조(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의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70호, 2025. 4. 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하여 소관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870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3절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자치분권 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소관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21.] [대통령령 제35817호, 2025. 10.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북한 인접지역으로 기존의 북한 인접지역인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및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와 지리적 여건이 유사하고, 관광사업 등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 가능성이 있는 경기도 가평군 및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를 추가하려는 것임.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0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정동영

⊙ 대통령령 제35817호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포천시"를 "포천시, 가평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춘천시"를 "춘천시, 속초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16호, 2025. 10. 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각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각 시·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488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을 정한 별표를 삭제하는 등 법률 개정사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16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0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제1항의"를 "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으로 한다.

별표 21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II. 다른 사·도 조례 입법동향

*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1

김해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0. 1.]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2185호, 2025. 10. 1., 제정]

□ 제정이유

-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맞춤형 청년 인재 육성 및 청년 역량 강화 사업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극적인 청년 참여를 통한 청년 주도 정책을 실현코자 함.

□ 주요내용

- 가. 청년친화도시 조성 관련 시장의 책무, 조성 원칙 및 행정적·재정적지원 (안 제3조~제5조)
- 나.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안 제6조~제7조)
- 다. 청년친화도시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0조~제14조)
- 라. 청년 역량강화 사업 및 청년학교 운영(안 제15조~제18조)

□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제24조의6,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8,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4조

□ 시·도별 현황

- 인천, 경기, 광주, 대구, 울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2

제주특별자치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

[시행 2025. 10. 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4101호, 2025. 10. 1., 제정]

□ 제정이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고 해양자원을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유해해양생물 관리계획의 수립·수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부상의 치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 관계법령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시·도별 현황

- 전남, 경북

3

연천군 폭염 대비 근로자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0. 14.] [경기도연천군조례 제4082호, 2025. 10. 14., 제정]

□ 제정이유

-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연천군 소속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폭염대비 물품지원, 휴게시간 조정, 건강관리 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 제3조)
- 나. 지원 대상, 지원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제5조)
- 다.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 시·도별 현황

- 연천군

4

경상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

[시행 2025. 10. 20.] [경상북도조례 제5377호, 2025. 10. 20., 제정]

□ 제정이유

- 플라스틱이 생활용품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그 생산량·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생활용품·의류 등에 함유된 플라스틱으로부터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여 환경은 물론 사람의 호흡기·소화기계 접촉을 통해 건강에 대한 위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선도적인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미세플라스틱의 위해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
- 나. 저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다. 실태조사 및 관계부서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부터 안 제6조)
- 라. 미세플라스틱 연구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7조)
- 마. 교육 및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부터 안 9조)

□ 관계법령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시·도별 현황

- 경기, 부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5

인천광역시 서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0. 20.]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2338호, 2025. 10. 20., 제정]

□ 제정이유

- 65세 이상 독거 노인 등 가스 안전 취약계층에게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스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지원 및 지원대상(안 제3조 ~ 안 제4조).
- 다. 지원신청 및 지원 결정(안 제5조 ~ 안 제6조).
- 라. 사업의 위탁(안 제7조).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시·도별 현황

-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충북, 충남, 전남, 경남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0. 20.]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1813호, 2025. 10. 20., 제정]

□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 내 폭력·학대·방임·가정 해체 등의 문제로 가정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제5조)
- 다.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안 제6조 ~ 제7조)
- 라.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및 통합지원체계 활용(안 제8조 ~ 제9조)

□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 기본법」

□ 시·도별 현황

-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전남, 전북

III.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 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1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3호·제4호의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 소유의 차량이나 장비 등 재산에 피해를 입은 경우 시장이 그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조례 규정 가능 여부

[의견25-0385] 충청남도 당진시

□ 질의요지

가.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제4호의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 소유의 차량이나 장비 등 재산에 피해를 입은 경우 시장이 그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에서 가능하다면) 질의 가에 따른 규정을 2025년 1월 1일 이후 피해를 입은 공무원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 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각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추5050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참조).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제4호의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 소유의 차량이나 장비 등 재산에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해당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로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4항에서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보수”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보수”의 사전적 의미가 일한 대가로 주는 돈이나 물품(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인 점을 고려할 때 질의요지와 같은 보상금이 공무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4항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이 가능한지는 소급입법의 내용이 침해적인지 수익적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인데 침해적인 성격의 소급입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것이나, 수익적인 성격의 소급입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 목적, 수혜자의 상황, 예산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고(각주: 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바67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1. 7. 20. 의견제시 21-0246, 법제처 2020. 12. 16. 의견제시 20-0269 참조).

이 사안에서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제4호의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 직무의 특성상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소유의 재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이 수익적인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목적, 공무원이 입은 재산상 피해 현황, 재난관리·안전관리 직무 수행 시 공무원이 소유한 개인 재산의 활용이 불가피한 지역적 특수성 및 예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 규정을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피해를 입은 공무원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면 질의 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지방양성평등기금의 용도를 같은 법 제43조 각 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 가능 여부

[의견25-0371] 전라남도 목포시

□ 질의요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지방양성평등기금의 용도를 같은 법 제43조 각 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 견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개정할 수 있습니다. (각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추5050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1항에서는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양성평등기금을 “기금”으로 약칭하고 있는데, 약칭이란 법령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구를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그 문구를 대표할 수 있는 문구로 줄여 간단하게 표시하는 방법이므로(각주: 법제처, 『2024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24, 793쪽 참조), 해당 조문 이후 조문에서의

“기금”은 같은 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양성평등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같은 법 제43조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양성평등기금의 용도를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에서 지방양성평등기금의 용도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159조에서도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 외에 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지방양성평등기금의 용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지방양성평등기금의 용도를 같은 법 제43조 각 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그 추진 상황을 지방의회에 중간보고하도록 조례 규정 가능 여부

[의견25-0350] 전라남도 고흥군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그 추진 상황을 지방의회에 중간보고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각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고사항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의견을 기다려 그에 따라야 하는 등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의도는 없는 것을 전제함.)

□ 의 견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같은 법에서는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집행을 통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추1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지방의회에 중간보고를 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보고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이나 의견을 기다려 그에 따라야 하는 등 법적 구속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지방의회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으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그 추진 상황을 지방의회에 중간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 집행기관에 대한 통상적인 견제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38조의 위임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에 같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의 범위를 벗어난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규정 가능 여부

[의견25-0369] 대전광역시 서구

□ 질의요지

- 가.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이하 “서구조례”라 한다) 제38조의 위임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에 같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의 범위를 벗어난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규정할 수 있는지?
- 나. 서구조례에서 정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추가변경하는 내용을 운영세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 다. 서구조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주민자치회의 장의 자격요건을 운영세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 견

가. 질의 가, 질의 나 및 질의 다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4항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구조례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수(제6조), 위원의 자격(제7조) 등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민자치

회의 장(제14조) 등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각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6항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참고조례안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서구조례 제38조(운영세칙)에서는 그 밖에 주민자치회, 사무국, 분과위원회 및 주민총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회장은 서구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고,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 위임 근거가 되는 서구조례에 위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9. 8. 20. 의견제시 19-0234 참조).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서구조례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2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6조), 운영세칙에 서구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규정하는 것은 운영세칙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인 서구조례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내용을 운영세칙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서구조례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제7조), 그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영세칙에 서구조례에서 정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추가·변경하는 규정을 두게 되면 서구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운영세칙으로서 그 자격을 박탈하거나, 서구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운영세칙으로서 위원의 자격을 부여하게 되어 조례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그러한 내용을 운영세칙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서구조례에서는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제14조), 자치회장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그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영세칙에 자치회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면 서구조례에 따라 자치회장으로 선출될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 운영세칙으로서 그 선출 자격을 박탈하게 되어 조례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그러한 내용을 운영세칙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IV. 국외 입법례

* 출처: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포털

오스트리아의 공공정보 접근권 관련 헌법 개정 및 정보자유법 제정

국회법률도서관 최신 외국입법정보 [2025-20호] (2025. 10. 28.)¹⁾

- 2024년 7월 18일, 오스트리아는 1925년부터 유지해온 ‘공무상 비밀의무’를 폐지하는 획기적인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비밀이 기본이고 공개가 예외’였던 공공정보 접근 원칙이 ‘공공행정의 투명성이 기본’인 원칙으로 전환되었다.
- 헌법 개정과 동시에 「정보자유법」이 제정되어 정보공개 및 접근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였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와 국민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신속한 처리 기한(4주 이내)과 법적구제 절차를 마련하였다.
- 오스트리아의 이번 개정 헌법과 「정보자유법」은 2025년 9월 1일 동시에 발효되었다.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된 민주주의 핵심 원칙인 정보공개를 헌법상의 의무로 확고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오스트리아가 오랫동안 국가 투명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온 상황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려는 노력의 결과로도 평가된다.
-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의 개관 및 헌법 개정 절차를 살펴보고, 특히 최신 헌법 개정 중 정보접근권 관련 내용과 「정보자유법」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 관련법령: 「대한민국 헌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주 제 어: 헌법 개정, 헌법 개정 절차, 공무상 비밀의무, 공공정보공개, 공공정보 접근권

1) 출처 국회법률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https://law.nanet.go.kr/foreignlaw/newForeignLawissue/list.do?isMenu=Y>

오스트리아 헌법 개관

- 1) 오스트리아 헌법은 단일한 성문헌법전이 아닌, '종합적 헌법(Gesamtverfassung)'이라고 불리는 다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1920년 「연방헌법」(B-VG)¹⁾을 중심으로 다수의 헌법적 법률 및 규정들(1867년 「국가기본법」(StGG)²⁾, 1964년 헌법적 효력이 부여된 「유럽인권협약」(ECHR)³⁾ 등)을 합쳐서 헌법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는 오랜 기간 정당 간의 갈등 속에서 특정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개별 법률 및 법률 규정들에 '헌법적 효력'(Verfassungsrang)을 부여해 온 오스트리아의 특수한 관행의 결과이다.⁴⁾
- 2) 「연방헌법」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극심한 혼란 속에서 각 정당의 이념적 대립을 조율하며 탄생한 실용적 타협의 산물로 평가된다. 특히 법학자 한스 켈젠(Hans Kelsen)은 국가의 구체적 목표를 규정하기보다 국가 의사결정 절차를 정의하는 중립적이고 기술적인 법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헌법 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2공화국의 토대가 되어 오스트리아 민주주의의 안정적인 발전을 이끌었다.⁵⁾
- 3) 「연방헌법」은 1920년 10월 1일 제정되어 이후 100회 이상 개정되었으나 본질적인 내용은 변함없이 유지되어왔다. 오스트리아 의회는 2020년 연방헌법 제정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오스트리아 헌법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행 헌법 중 하나라고 자평했다.⁶⁾ 최근 2024년 7월 18일 「연방헌법」에 공공정보 공개의무 및 정보접근권을 명시하는 개정이 이루어졌고 2025년 9월 1일 발효되었다.

1) Bundes-Verfassungsgesetz
<https://www.ris.bka.gv.at/GeltendeFassung.wxe?Abfrage=Bundesnormen&Gesetzesnummer=10000138>
※ 번역문: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포털 외국법률번역DB

2) Staatsgrundgesetz
<https://www.ris.bka.gv.at/GeltendeFassung.wxe?Abfrage=Bundesnormen&Gesetzesnummer=10000006>

3)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4) 오스트리아 의회(Parlament Österreich) 홈페이지, "연방헌법 제정 100주년"
<https://www.parlament.gv.at/verstehen/historisches/100-jahre-b-vg>

5) 오스트리아의 제1공화국은 내부의 이념적 대립으로 1938년 나치 독일에 합병되면서 붕괴했지만, 1920년 「연방헌법」의 법적·기술적 틀 자체는 그 생명력을 유지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오스트리아는 이 헌법을 부활시켜 1945년 제2공화국 수립 시 헌정적 토대로 삼았다. 오스트리아 의회,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의 탄생"
https://www.parlament.gv.at/dokument/unterlagen/Text_Schefbeck_Entstehung-der-Bundesverfassung.pdf

6) <https://www.parlament.gv.at/fachinfos/r/w/100-Jahre-Bundes-Verfassungsgesetz>

오스트리아의 헌법 개정 절차

- 오스트리아 의회는 '국민의회'(Nationalrat)⁷⁾와 '연방의회'(Bundesrat)⁸⁾로 구성되어 있고 헌법 개정 절차에서 각각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 헌법이나 개별법에 포함된 헌법 규정은 '국민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투표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다. 이때 '헌법'(Verfassungsgesetz), '헌법 규정'(Verfassungsbestimmung)이라고 명시하여야 한다(제44조제1항).
 - 한편 헌법이나 개별법에 포함되어 있고, 입법과 집행에서 주(州)의 권한을 제한하는 헌법 규정은 '연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투표수의 2/3가 찬성하여야 한다(제44조제2항).
-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에서는 헌법 개정 발의권자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통상적인 입법 절차에 따라 입법제안은 국민의회 의원, 연방의회, 연방의회 의원 1/3 이상의 발의안이나 연방정부의 법률안으로 국민의회에 제출된다(제41조).⁹⁾
- 헌법의 기본 구조를 변경하는 전면 개정의 경우,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반면, 특정 조항만 변경하는 부분 개정은 국민의회 의결에 따라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제44조제3항).
- 오스트리아의 최신 헌법 개정인 2024년 7월 18일 헌법 개정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공공 정보 접근권에 관한 것이다. 헌법 개정과 동시에 「정보자유법」(IFG)¹⁰⁾이 제정되었고, 개정 「연방헌법」과 「정보자유법」은 동일하게 2025년 9월 1일 발효되었다.

7) 오스트리아 '국민의회'는 183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16세 이상 오스트리아 국민이 선거권을 갖는다. 임기는 5년이지만 의회해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보다 더 짧아진다(제26조 이하).

8) 오스트리아 '연방의회'는 독일의 '연방참사원'(Bundesrat)과 같은 독일어 명칭을 사용하는데, 법적 성격은 다르다. 독일의 연방참사원은 각 '주정부'가 직접 대표를 파견하여, 각 주는 인구 규모에 따라 3-6표를 보유한다. 이에 비해 오스트리아는 각 '주의회'가 의원을 간접 선출하며 현재 6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장은 6개월마다 주 명칭의 알파벳 순서로 순환된다(제34조 이하). 오스트리아는 9개의 주(부르겐란트, 케른텐, 니더외스터라이히, 오버외스터라이히, 잘츠부르크, 슈타이어마르크, 티롤, 포어아를베르크, 빈)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다(제2조).
<https://www.parlament.gv.at/verstehen/bundesrat/index.html>

9) 「대한민국 헌법」은 제128조에서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0) 정보접근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en Zugang zu Informationen, Informationsfreiheitsgesetz
https://www.ris.bka.gv.at/Dokumente/Erw/ERV_2024_1_5/ERV_2024_1_5.pdf

최신 「연방헌법」 개정: 공공정보 공개 및 접근권

- 2024년 헌법 개정을 통해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제20조제3항에서 제5항에 규정되어 있던 '공무상 비밀의무'(Amtsgeheimnis)가 폐지되었다.¹¹⁾ 이는 '비밀이 기본, 공개가 예외'였던 기존 원칙을 뒤집고, '공공행정의 투명성이 기본'이 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다.
- 신설된 제22a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보장한다.
 - 정보공개 의무: 연방정부, 주정부, 법원 등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 등은 '일반 공공(대중)'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를 스스로 공개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를 진다.
 - 정보접근권: 개인이 행정기관 등에 특정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한다.
- 정보공개 의무 대상에는 주정부(Länder), 연방정부 등 모든 기관이 포함된다. 다만, 인구 5천 명 미만인 기초지방자치단체(게마인데, Gemeinde)는 사전적·적극적 공개(proaktive Veröffentlichung)를 해야 하는 의무에서는 예외가 되며, 개인의 요청에 의한 정보제공 의무만 적용된다.
- 국가 안보, 외교, 재정적 손해 우려 등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세부 내용은 「정보자유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이번 개정 「연방헌법」에서 신설된 제22a조 규정은 다음과 같다.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제22a조 [신설]

- (1) 국민의회(Nationalrat)와 연방의회(Bundesrat), 연방 및 주의 행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 행정기관, 일반법원, 감사원, 행정법원, 헌법재판소 및 옵부즈만은 제2항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익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인구가 5,000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연합은 공개 의무가 없으며, 이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1)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제20조 [삭제]

(3) 연방, 주 및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 공법상 단체의 기관은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공적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모든 사실 중 그 비밀유수가 공공의 안녕, 질서 및 안전, 포괄적인 국토방위, 외교관계에 이익이 되고 공법상 단체에 경제적 이익이 되며, 결정의 준비 또는 정당에 중대한 이득이 되는 경우 비밀유지의무가 있다(직무상 비밀유수). 일반대의기관이 임명된 공무원은 해당 대의기관이 그러한 정보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해당 대의기관에 대해 직무상 비밀유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4) 연방, 주 및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업무를 위탁받은 모든 기관과 공법상 단체의 기관은 비밀유수의 법적 의무에 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활동 영역에 관한 사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직입대표 기관은 법적인 임무를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속 구성원에게만 정보제공에 관한 의무를 갖는다. 연방기관 및 연방입법이 규정하는 입법과 집행의 자치행정예 관한 상세한 규정은 연방의 소관이며 주와 기초자치단체의 기관, 주입법에서 규정하는 기본원칙 입법의 자치행정예 관한 상세한 규정은 연방의 소관이며, 시행입법과 집행은 주의 소관이다.

(5) 연방, 주 및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업무를 위탁받은 모든 기관은 비밀유수가 제3항에 따라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비용을 포함하여 기관이 의뢰한 연구, 보고서, 설문 조사를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2) 모든 사람은 연방 및 주 행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이는 통합 또는 외교 정책의 불가피한 이유, 국가안보, 포괄적 국방 또는 공공질서와 안전 유지, 결정 준비, 지역 또는 기타 자치 기관에 대한 중대한 경제적 또는 재정적 피해 방지 또는 다른 기관의 최우선적 합법적 이익 보호를 위해 해당 정보의 비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는 예외이다. 다른 자치 기관은 자체 책임 영역 내의 사항에 대해서만 구성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3) 모든 사람은 감사원 또는 주 감사원의 관리 아래 있는 재단, 기금, 기관 및 사업체와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단, 연방정부,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또는 감사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사업에 대한 참여가 등록 자본, 주식 자본 또는 자기 자본의 최소 50%에 해당하거나 해당 참여 비율을 가진 사업체보다 상위 수준인 경우에 한한다. 단, 제2항에 따라 정보의 비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사업체의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정보에 대한 동등한 접근이 보장되고 법률에 따라 달리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세부 규정은

1. 연방법에 따라 정해지며, 주의 법률에 귀속된 사안일지라도 통일된 규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보 주체에 대한 집행 사항이 연방의 사안인지 주의 사안인지에 따라 집행 주체를 정한다.
연방은 제1항에 따라 주에 입법안 작성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다. 이러한 연방법률은 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포될 수 있다. 개별 분야를 규율하는 연방법 또는 주법에는 해당 사안을 규제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정보자유법」 제정

- 이번 헌법 개정의 특징으로는, 헌법 조항만 추가된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 접근 절차, 절차적 장치, 예외 사유, 중앙정보등록부 웹사이트 설치 등 구체적 실행을 위한 일반 법률인 「정보자유법」이 동시에 제정된 점을 들 수 있다.
- 2025년 9월 1일 발효된 「정보자유법」은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일반의 이익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특정 기관의 활동 또는 사업 영역 내 정보에 대한 접근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제1조).

정보공개 의무 기관

- ▲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기관
- ▲ 법률에 의해 설립된 자치 기구의 기관
- ▲ 연방 또는 주 행정 업무를 위임받은 기타 법인 및 자연인의 기관
- ▲ 회계감사원 또는 주 회계감사원의 통제를 받는 재단, 기금, 기관
- ▲ 회계감사원 또는 주 회계감사원의 통제를 받는 기업.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 연방,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통제 대상 법인과 공동으로 자본금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 연방,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경제적 또는 조직적 조치를 통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 의무:** 행정업무를 위임받은 기관 및 사법기관은 일반의 이익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한 빨리 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하고 유지해야 한다. 단,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제6조)이 아니며 일반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동안에만 해당된다. 주민 5천 명 미만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이 의무에서 면제되지만,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제4조).
- **비공개 사유:** 정보의 공개 또는 접근 요청은 다음의 사유가 존재하고, 비공개가 필요하며 비례의 원칙에 부합할 경우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비공개 사유를 적용할 때는 정보공개 이익(특히 표현의 자유 행사)과 비공개의 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제6조제1항). 정보 일부만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부분만 비공개 처리하고 나머지는 공개해야 한다(부분공개 원칙, 제6조제2항).

비공개 사유

- ▲ 통합 또는 외교 정책상의 강제적 사유: 유럽연합법 또는 국제법상 의무 준수 등
- ▲ 국가안보, 포괄적 국방, 공공질서 및 안보 유지
- ▲ 의사결정 준비과정의 보안: 정부, 장관, 지방 정부 등의 합법적 의사 결정 과정 및 그 준비 보호
- ▲ 공식 또는 사법 절차의 이익: 기관의 감사나 기타 활동, 협상 및 투표의 법적 기밀성 보호
- ▲ 기관, 지방 당국 또는 자치 기구에 대한 중대한 경제적 또는 재정적 피해 방지
- ▲ 타인의 우선적인 정당한 이익: 개인정보, 직업·사업 또는 영업비밀, 은행 비밀, 미디어 편집상의 비밀, 지적 재산권 보호

- **정보접근 절차:** 동법에서 규정하는 정보접근 단계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절차 단계	내용	관련 조항
정보 요청	· 서면, 구두, 전화 등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형태로 요청 가능함. 정보는 가능한 한 정확하게 특정해야 함.	제7조
처리 기한	· 요청 접수 후 지체없이, 최대 4주 이내에 정보접근을 허용해야 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를 고지하고 추가 4주 연장 가능함.	제8조
정보 제공	· 요청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 이미 공개되었거나 다른 방법으로 더 쉽게 접근 가능한 정보로 안내 가능함.	제9조
접근 거부 사유	· 요청이 명백히 악의적이거나, 정보제공이 해당 기관의 다른 활동을 중대하고 불균형적으로 저해할 경우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제9조제3항
이해관계인 절차	· 정보제공이 제3자의 권리(제6조제1항 제7호)를 침해할 경우, 정보제공 전 해당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	제10조

- **법적구제 절차:** 정보접근이 거부된 경우, 요청자는 해당 기관에 서면으로 공식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은 2개월 이내에 결정서를 발급해야 한다(제11조제1항).
 - 기관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기관이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법원은 2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하며, 소송 전 사전 결정 기한은 3주로 단축되는 등 신속한 절차가 보장된다(제11조제2항).
 - 행정법원은 접근 거부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어느 범위까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명시적으로 판결해야 한다(제11조제3항).
 - 정보 요청, 정보제공 절차 관련 신청, 정보 자체 및 관련 결정서에 대하여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수료는 면제된다(제12조).
- **민간 주체에 대한 적용:** 회계감사원의 통제를 받는 재단, 기금, 기관 및 기업(공기업 등)에도 정보접근 절차가 준용된다(제13조). 이들 기관의 경쟁력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 상장회사 및 종속기업은 이 법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에서 제외된다.
 - 이들 민간 주체가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요청자는 기관의 결정서 없이 정보제공 기한 만료 후 4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직접 분쟁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법원은 2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제14조).
- **지원 및 감독 기관:** 데이터보호청(DSB)¹²⁾은 동법의 실행과 관련하여 정보제공 의무기관을 자문하고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데이터 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데이터보호청은 법 발효 후 3년 이내에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정부와 의회에 제출된 후 대중에게 공개된다(제15조).
- **사전 정보공개 의무(제4조제1항)**는 2025년 9월 1일 이후 생성되는 정보에 적용된다. 그 이전에 생성된 정보도 자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제20조).

요약 및 결론

- 오스트리아는 1925년부터 시행해 온 '공무 비밀 원칙'을 폐지하고, 2024년 7월 18일 「연방헌법」 개정을 통해 투명성 원칙을 국가 운영의 최고 가치 중 하나로 격상시켰다. 이는 오랫동안 시민의 알 권리보다 행정 기밀 유지를 우선시하여 정부 불신과 부패 은폐의 도구로 비판받아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2025년 9월 1일 발효한 이번 개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된 민주주의 핵심 원칙인 정보공개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임시 정책이 아닌, 정부가 어떤 경우에도 준수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제22a조 신설)로 확고히 했다.

12) Österreichische Datenschutzbehörde. <https://dsb.gv.at/>

- 헌법 개정과 동시에 발효된 「정보자유법」은 공공기관의 적극적 정보공개 의무와 국민의 정보 요청 권리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한다. 동법은 신속한 처리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데이터보호청이 3년 이내 입법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법의 실효성 제고와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 이번 제도 개혁은 유럽연합 내에서 낮은 투명성 평가를 받아온 오스트리아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중요한 제도적 결실이다. 실제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2024년 법치주의 보고서”¹³⁾는 「정보자유법」 제정을 공공정보 접근 권고 이행의 긍정적인 발전으로 평가했다. 다만, 국제 시민단체 Access Info Europe(유럽 전역의 정보접근권 증진 및 보호에 중점을 둔 인권단체) 등은 오스트리아의 「정보자유법」이 “진보적 개혁이라기보다는 최소한의 개선”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며, ▲정보 정의의 협소함 ▲미흡한 사전공개 의무 ▲예외조항 적용 시 공익성 테스트 부재 ▲불이행 시 제재조치 결여 등 실질적인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¹⁴⁾ 국제 투명성 기준(트롬쇠 협약)¹⁵⁾ 대비 여전히 존재하는 제도적 한계¹⁶⁾는 향후 오스트리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13) European Commission, “2024 Rule of Law Report - Country Chapter on the rule of law situation in Austria”
https://commission.europa.eu/document/download/bcfe8b8e-4c42-461d-b560-efcf1f29e87_en?filename=46_1_58076_coun_chap_austria_en.pdf

14) Access Info Europe, “Legal Analysis of the Austrian Freedom of Information Act”
https://www.access-info.org/wp-content/uploads/Legal-Analysis-of-Austrian-FOIA_-Access-Info-Europe.pdf

15) Tromsø 협약(유럽평의회 공식 문서 접근에 관한 협약,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Access to Official Documents)
<https://rm.coe.int/1680084826>

16) Global Right to Information, <https://www.rti-rating.org/>

추천 자료

-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세계의 헌법』 제4판, 2025.
- 국회의원 연구단체 소통과 상생을 위한 헌법 연구 모임, “독일과 오스트리아 권력구조: 한국에의 시사점”, 2014.
- 최희수, “분권형 개헌논의와 오스트리아 정부형태”,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제37호, 2017.

최신 외국입법정보

국내 언론매체·법안의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입법현안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례와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 ◆ 입법정보는 법률 제정·개정 주요사항, 타 시·도 조례 입법동향,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국외 입법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 법령 입법예고 사항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법제처: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isOgYn=Y>

【문의】 입법정책담당관 ☎ 033-249-5709